

연구 분과회 규정

- 제 1 조 본 회 정관 21 조에 의거하여 연구분과회를 둔다. 세부 전공 연구 분야의 학술 활동을 촉진하고 연구자들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분야별 분과회(분과회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
- 제 2 조 각 분과회 구성인원은 최소 20 인 이상이어야 하고, 분과회 세칙을 정하고 이의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, 대한생리학회 정관 및 제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.
- 제 3 조 각 분과회는 세칙에 따라 분과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며 그 명단을 실행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 4 조 각 분과회는 회비를 징수할 수 있고, 보조금이나 기부금은 본 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.
- 제 5 조 각 분과회의 사업계획,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제 6 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실행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.
(1996 년 10 월 17 일 제정)